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98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미애 · 김위상 · 최수진
김은혜 · 김기현 · 김소희
추경호 · 김선교 · 이종배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그런데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안전조치·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

1항, 제44조제2항 신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마다”를 “2년마다”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2.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 · 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 태조사”라 한다)를 <u>5년마다</u>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 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 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수시 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 ----- ----- ----- ----- <u>2년마</u> <u>다</u>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생 략) <u><신 설></u>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시장·군수등이 시</u> <u>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u> <u>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2.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u>비용</u>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